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053

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 강대식 · 조지연 · 유용원

고동진 · 강선영 · 배준영

구자근 · 정점식 · 김상훈

강명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상 내란의 죄·외환의 죄, 「군 형법」상 반란의 죄·이적(利敵)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 환하되,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역 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거나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제적을 당하는 경우에도 최대 50%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 또는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 급하지 않고,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 하도록 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제4 항).

법률 제 호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4항 중 "제2장(외환의 죄)"을 "제2장(외환의 죄)·제24장(살인의 죄)"로, "「군사기밀 보호법」(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)에"를 "「군사기밀 보호법」(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)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각 목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퇴직급여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행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
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8조(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| 제38조(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|
| 제한) ① ~ ③ (생 략) | 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|
| ④ 복무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 | 4 |
| 제2편제1장(내란의 죄)· <u>제2장</u> | 제2장 |
| <u>(외환의 죄)</u> , 「군형법」 제2편 | <u>(외환의 죄)·제24장(살인의</u> |
| 제1장(반란의 죄)ㆍ제2장[이적 | <u>죄)</u> |
| (利敵)의 죄], 「국가보안법」 | |
| (제10조는 제외한다), <u>「군사기</u> | |
| 밀 보호법」(제13조의2와 제15 | <u></u> 「군사기밀 보호 |
| 조에 한정한다)에 규정된 죄를 | 법」(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 |
|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| 정한다), 「아동·청소년의 성 |
| 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|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 |
| 총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 | 호 각 목에 |
| 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 | |
| 하되,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 | |
| 다. | |
| | |
| | |